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3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신성범·김종양·박정하

조은희 • 이만희 • 김승수

박대출 · 정희용 · 강대식

박준태 • 신동욱 • 유상범

조배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 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법률 제 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을 제7조의11로 하고, 제7조의8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8(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9(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10(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8에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경우
- 2. 제7조의9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7조의8(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환급금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
| | <u>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u> |
| | 납부한 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 |
| | 체의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
| |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
| |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
| |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 |
| | 는 환급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 |
| | 부과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
| |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 |
| | 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u><신 설></u> | 제7조의9(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 |
| | <u>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u> |
| | 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
| |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 |
| | 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
| |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 |
| | 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u><신 설></u> | 제7조의10(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 |
| |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8에 따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환급금 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로 납부한 자 중 지방행정제 재・부과금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 2. 제7조의9에 따라 지방행정제 재·부과금 환급금 지급계좌 를 신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권 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7조의11</u> (현행 제7조의8과 같음)

제7조의8 (생략)